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256
------------	-----

제출연월일 : 2004년 11월 3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이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체계적 추진을 위한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는 10인 이내의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안 제4조 및 제5조)
- 국내기업 지원대상(안 제8조)
 -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 10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한 후 상시고용이 100인 이상일 경우
 - 낙후지역에 100인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 국내기업 지원내용(안 제9조 내지 제12조)
 - 입지보조금 : 매입토지가격의 50%범위내에서 지원
 - 건축비등 보조금 : 20억 이상 투자액의 3%범위 최대 2억원 이내
 - 고용·교육훈련보조금 : 신규 20명 초과 1인 50만원 6월 범위

○ 외국기업 지원 대상(안 제22조 및 제23조)

- 교육훈련보조금 : 20명 이상 신규고용 1인당 50만원
6월 범위 총 1억원 이내 지원
- 고용보조금 : 20명 이상 신규고용 1인당 50만원 6월
범위 총 2억원

○ 지원금 재원분담 : 지방재정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지방자치단체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을 준용함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안 제27조)

3. 의안전문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충청북도기업및외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기업 및 외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 2.“지방이전기업”이라 함은 별표 수도권내소재지역에서 충청북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 3.“지원기준”이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지방 이전기업유치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기준을 말한다.
- 4.“본사”라 함은 법인등기부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 5.“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6.“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 7.“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대상토지를 말한다.
- 8.“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기업에게 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의 매입 또는 임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9.“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10.“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11.“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다음 각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 가.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 12.“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 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13.“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 14.“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 15.“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16."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충청북도의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자금 지원등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 체제

제4조(투자유치위원회) ①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운영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투자유치 업무 관련 실·국장

2. 충청북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경제과장 또는 국제통상과장이 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중요시책

2.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중 결원이 있을때에는 보궐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진흥관) ① 외국인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통상과에 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둔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국제통상과장이 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투자유치 전문가 활용 등)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투자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의 관계자 등을 투자유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투자 유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대규모 투자사업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 전문회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등

제8조(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①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국내기업은 별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 100인이상 기업(이하 "해당 기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하고, 이전한 기업의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이상인 기업을 유치한 경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기업의 본사가 지방이전한 때에는 이전후 상시 고용인원이 50인이상인 경우로 하며, 해당기업의 연구소가 지방이전한 때에는 상시 고용인원이 30인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의 낙후지역에서 상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별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0인미만으로서 2개 이상기업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집단으로 이전 하는 때에 상시 고용인원의 합이 100인이상인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는 지방이전 기업이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이후 2년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⑤지방이전 기업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입지보조금) ①도지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기준에 의하여 정상 토지가격 또는 정상 임대료의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토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내 또는 인근 산업단지내 동일면적의 토지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분양·매입 또는 임대(이하 “분양 등”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 지역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임대료를 50년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건축비·시설비등에 대한 보조금) ①도지사는 지원기준에 의하여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에 대하여 20억원 이상 투자시 초과금액의 3% 범위안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고용보조금) ①도지사는 지원기준에 의한 지방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하로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이후 상시 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①도지사는 지원기준에 의한 지방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하로 최대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조금 교부결정)** ①도지사는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한다.
- 1.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 2.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3.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 4.자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이전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는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②도지사는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금 교부를 결정 및 신청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이전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도지사는 보조금 교부결정후 탄생한 새로운 사정으로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①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받은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관리케 하여야 한다.

②지방이전기업이 자금을 지원 받은 이후 다른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④지방이전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5년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이내에 충청북도 이외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⑤지방이전기업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8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동안 상시 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도지사는 지방이전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이전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실적보고 및 정산금 반환)도지사는 지방이전기업이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 및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보고하게 하고 정산에 따른 잔액이 있을 때는 이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여부의 확인) 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전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시 해당기업으로부터 이전 및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당초 제출한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기업유치 지원) ①도지사는 지원기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제18조(지원한도)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이전건당 도비 2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4장 외국기업 투자 지원 등

제19조(지방세 감면)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세감면조례 및 시·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금융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 및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입지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을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사용·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 등에 대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하거나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 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고용보조금 지원) ①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현금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금 지원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5조(외국인 생활환경시설 개선지원)도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의6의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 분담 등) ① 투자기업에 대한 도와 시·군간의 경비분담비율은 지방재정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지방자치단체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의 투자유치 여건과 투자기업에 대한 도와 시·군간의 경비분담비율을 달리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파견근무)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도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이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은 자는 관련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과 충청북도보조금 관리조례 및 개별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 일부터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이전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도지사는 관련기업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토지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31조(포상금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제1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포상금 기준율에 의해 최고 미화 50,000불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기준금액(유치액)	포상금기준율
① 1,000만불 미만	포상금 기준액의 0.1%
② 1,000만불5,000만불	①+1,000만불 초과액의 0.05%
③ 5,000만불1억불	①+②+5,000만불 초과분의 0.01%
④ 1억불 이상	①+②+③+1억불 이상 초과분의 0.0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우대를 병행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조례 제2449호, 1999. 4. 2 제정)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한다.

[별표]

수도권내 소재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연수구 송도매립지* 제외)

*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파동·이파동·삼파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

관련법령 발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 제16조 (기업의 지방이전)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3. 그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工場"이라 함은 建築物 또는 工作物, 物品製造工程을 形成하는 機械·裝置 등 製造施設과 그 附帶施設(이하 "製造施設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造業을 영위하기 위한 事業場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5. "產業團地"라 함은 工場·知識產業關聯施設·文化產業關聯施設·情報通信 產業關聯施設·資源備蓄施設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情報處理·流通施設 및 이들 施設의 機能提高를 위하여 施設의 從事者와 利用者를 위한 住居·文化·醫療·觀光·體育·福祉施

設 등을 집단적으로 設置하기 위하여 포괄적 計劃에 따라 지정·開發되는 一團의 土地로서 다음 각目的 것을 말한다.

가. 國家產業團地: 國家基幹產業·尖端科學技術產業등을 육성하거나 開發促進이 필요한 落後地域이나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걸치는 地域을 產業團地로 開發하기 위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產業團地

나. 地方產業團地 : 다음의 구분에 의한 產業團地를 말한다.

(1) 一般地方產業團地 : 產業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產業團地

(2) 都市尖端產業團地 : 知識產業·文化產業·情報通信產業 등 尖端產業의 육성을 위하여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안에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產業團地

다. 農工團地: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漁村地域에 農漁民의所得增大를 위한 產業을 誘致·육성하기 위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產業團地

□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업대업
2. 부동산중개업

-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 4.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 5. 건설업(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外國人"이라 함은 外國의 國籍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法人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經濟協力機構를 말한다.
2. "大韓民國國民"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國籍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大韓民國法人"이라 함은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法人을 말한다.
4. "外國人投資"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外國인이 이 法에 의하여 大韓民國法人(設立중인法人을 포함

한다) 또는 大韓民國國民이 영위하는 企業의 經營活動에 參여하는 등 당해 法人 또는 企業과 지속적인 經濟關係를 수립할 目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法人이나 企業의 株式 또는 持分(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所有하는 것

나. 外國人投資企業의 海外母企業 및 그 母企業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出資關係가 있는 企業이 당해 外國人投資企業에 貸付하는 5年이상의 借款

5. "外國投資家"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株式등을 所有하고 있는 外國人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의2.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④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국가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

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3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유치포상금운영지침 (산업자원부 지침)

第4조(포상금 지급금액) ② 포상금 지급금액은 우리나라에 실제로 도착한 외국인투자금액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기여도 및 프로젝트의 질 등을 평가하여 "포상금기준금액"을 산정한 후, 포상금기준금액에 해당하는 <별표2>의 "포상금지급기준금액"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포상금지급금액은 미화 50,000불을 초과할수 없다.

[별표 2] 포상금기준율(제4조2항관련)

포상금 기준금액(유치액)	포상금 기준율
① 1,000만불 미만	포상금 기준액의 0.1%
② 1,000만불5,000만불	①+1,000만불 초과액의 0.05%
③ 5,000만불1억불	①+②+5,000만불 초과분의 0.01%
④ 1억불 이상	①+②+③+1억불 이상 초과분의 0.005%

□ 지방재정법

第19條 (經費負擔의 比率 등) ①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할 經費 중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할 經費의 種目
및 負擔比率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등)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
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용자금으로 조달
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방
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 [행자부령 제110호]

제2조 (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율"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율은 시·도와 시·군·자치구 상호간의 이해관계와 사업성격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도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가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 비율 (他部處分 省略)

부처별	사업명	도	시·군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유치(경상, 자본)	50%	50%
	석탄비축	50%	50%
	농어촌전화사업	50%	50%